

# 제2매립장 마을가꾸기사업비 세부시행기준

## ① 배경 및 목적

- 2018. 5. 10.부터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지원지침에서 위임된 마을가꾸기사업비 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등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규정
- 주민지원사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 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② 기본방침

-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비는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 및 ‘제2매립장 마을가꾸기사업비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집행
- 법정동(읍)별로 배분된 마을가꾸기사업비는 마을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집행하되, 추진과정의 민원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③ 마을가꾸기사업비의 통·리별 배분 및 가구별 현물 지원규모 산정

### ① 통·리별 배분

- 공사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분·확정한 마을가꾸기사업비를 통·리별 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마을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마을별 특성과 그간의 배분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리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

- 마을가꾸기사업비를 통·리별로 배분·확정한 마을발전협의회에서는 증빙서류(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등)를 첨부하여 주민지원협의를체를 통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에서는 통·리별로 마을가꾸기사업비 관리

## ② 가구별 현물 지원규모(지원액) 산정

- 마을가꾸기사업비를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 및 ‘제2매립장 마을가꾸기사업비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가구별 현물 지원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등은 위 전문연구기관 의뢰 이외의 방법으로 가구별 현물 지원규모를 산정할 수 없으며, 지원지침과 세부시행기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임의적으로 가구별 현물 지원규모 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 ④ 마을가꾸기사업비 대상사업 및 추진방법

### ① 대상사업

- 마을가꾸기사업비의 공동사업(법정동<읍> 또는 통·리) 및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유형으로 마을발전협의회 논의·결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과 공사가 검토·승인한 사업에 한함
- 통·리별 공동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고시(제2018-0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 항목은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청소 및 소독비, 화재보험료로 제한함. 아울러 공동관리비는 당해연도분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예정인 공동관리비 지원 항목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항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전년도 부과·집행된 공동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전년도 공동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18년 공동주택 공동관리비는 2017년 부과·집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2018년도분의 사업계획 수립·승인을 통해 지원(2017년 이전의 공동관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마을가꾸기사업비를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지원대상별 현물 지원 물품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통해 위 전문연구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세대주가 자유롭게 직접 물품을 선정함

※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추진 가능(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제외)

## ② 추진방법

- 마을가꾸기사업비의 공동사업(법정동<읍> 또는 통·리) 및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의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통·리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마을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당해연도분 마을가꾸기사업비를 통·리별로 배분하고,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마을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방법(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을 결정하여야 함
- 마을가꾸기사업의 사업계획은 지원지침 및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주체별(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의록, 참석자 명부 및 사업규모(추정가격)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열람용보고서, 세대별 현물 지원 물품 현황<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세부추진절차(흐름도) 】



지원대상자(세대)의 현물 지원 물품 선정 시작일과 기한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결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제출하는 견적서의 유효기간(3개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결정사항은 게시판 및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지)

- (사업비 청구서 구비서류) 사업추진주체별로 마을가꾸기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관련 입찰 서류, 계약서, 각종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감독자·검사자 준공 조서, 사업

사진대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통장 사본,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가구별<현물>사업은 별도의 청구 절차를 생략(사업계획서로 갈음)하되, 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세대별 물품 납품 및 설치 등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가구별(현물)사업을 추진할 때 통·리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지원액)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문 공고 등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주민등록초본(세대주, 최근5년간의 주소 변경사항 포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5 마을가꾸기사업 업체 및 물품 선정방법

### ① 업체선정방법(계약방법)

-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주체별(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참가자의 자격(지역 및 실적 등)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마을가꾸기사업의 사업규모(추정가격)가 5천만원(부가세별도)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조달청 누리장터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달청 누리장터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규모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지원지침과 세부시행기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업체선정방법 및 계약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주체가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비 지급)**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주체별로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마을발전협의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공사에 청구(필요시 선금금 등 청구 가능)하여야 하며, 공사에서는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 또는 단체에 직접 지급(운영비 등 특정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마을회 등에 지급)

## ②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물품 선정방법

-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의 물품 선정(구매)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세대주가 자유롭게 직접 물품을 선정한 후 사업추진위원회에 구매처(사업자)의 견적서(계약서로 갈음하며, 최소 3개월은 유효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해당 통·리의 사업계획 수립
- 통·리별로 수립한 가구별(현물)사업의 사업계획은 지원지침에 따라 마을발전협의회 논의·결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과 공사의 검토를 통해 공사가 사업자에게 물품 구매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세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추진(세대주는 사후적으로 물품 납품 및 설치의 사진 등을 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마을발전협의회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세대)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이 없으나, 구매 가능 구매처(사업자)는 김포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한정(인터넷사업자 제외)하며, 지원대상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사업자)는 1곳으로 제한함. 다만, 지원규모가 500만원 이상인 지원대상은 2곳의 구매처(사업자)에서 구매 가능

### 주 의

- ☞ 마을가꾸기사업의 모든 업체선정방법은 지원지침 및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주체별(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비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마을가꾸기사업의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됨. 아울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해야 하고, 재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마을가꾸기사업의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생략 가능), 지체상금(遲滯償金), 필요 시 공사 등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인되었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함
- ☞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모든 지원대상(세대)이 물품 선정을 완료한 이후에 통·리별 배분액 및 세대별 지원규모(지원액)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⑥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

-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은 공사 사장이 고시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제2016-01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세대에 한함

- 동일 주소지에 세대주(배우자포함)의 직계가족이 같이 거주하면서 2이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함.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동일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
- 그간 매년 법정동(읍)별로 배분한 공동사업비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가구별(현물)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지침 시행일(2018.05.10.) 이후의 당해연도분 주민지원사업비(잔액 또는 신규사업비)는 직전년도 12. 31. 이전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전입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
  - ※ 지원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동사업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마을발전협의회별로 지원대상을 각각 결정하였음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이후에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의 지원규모(지원액) 지급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가 마을발전협의회와 논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가구별(현물)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일괄 적용. 다만,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마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주지가 노인복지시설, 병원 및 공장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대상기간 중 주변영향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실거주지를 옮긴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변영향지역 안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동시에 변경(법정동 및 통·리 변경)된 세대는 해당연도별로 거주기간이 긴 통·리에서 일괄 지원

-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해당 통·리 지역주민의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선정하여 통보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거주 여부 등을 검토하여 회의결과로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통해 위 전문연구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열람용보고서(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명시)는 해당 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기한을 정하여 마을발전협의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함

### 주 의

- ☞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마을발전협의회에서 **2개년도분 이상의 마을가꾸기 사업비를 일괄하여 가구별(현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원대상별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추진위원회는 세대주에게 실거주 및 직계가족 세대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추진위원회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세대에 대해서 회의결과로 세대 분리를 1세대로 간주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세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⑥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 및 제외대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 거주지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제외 가능 대상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인 세대주도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세대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영향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토지(대지) 및 건물(가옥)을 소유한 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7 기타사항

- 이 세부시행기준은 2018. 5. 28.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세부시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계획(청구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는 물론,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세대)가 물품구매처(사업자)와 결탁하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법정동(읍)의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중단 이후에는 공동사업으로만 추진 가능)
- 마을가꾸기사업은 사업추진주체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야 하고, 감독자 및 검사자를 선임하여 준공검사 후 해당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는 마을가꾸기사업의 적정 추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 및 사업추진주체 등에게 사업추진과정 또는 사업완료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및 사업추진주체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붙임 : 1. 회의록(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2. 참석자 명부(마을발전협의회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3. 사업계획서(법정동<읍> 및 통·리별 공동사업,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4. 청구서(법정동<읍> 및 통·리별 공동사업,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
5.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 신청서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1]

## (○○동 ○○통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대상자 및 실제 참석인원을 구분하여 작성)
- 회의내용

※ 안건 설명, 안건에 대한 참석자의 발언 내용, 회의결과(결정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주재자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함

[붙임 2]

## (OO동 OO통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부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연번 |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
|----|-------|-------|----------|-----------|-------|
| 1  | 위원장   | 홍길동   | 00.00.00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명부는 참석자 본인이 직접 기재·서명하여야 함(일괄 기재·날인 명부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3]

## 사 업 계 획 서

○ 사업추진주체 : ○○동(읍) ○○통(리) 사업추진위원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원정(₩                      ) / ○○○○○년도분

○ 사업목적

-

○ 세부사업내용

-

※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은 열람용보고서, 세대별 현물 지원 물품 현황<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확약) ○○동(읍) ○○통(리) 사업추진위원회는 위 사업을 청럼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과 ‘제2매립장 마을가꾸기사업비 세부시행기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준수 등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공사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동(읍) ○○통(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인)

[붙임 4]

## 마을가꾸기사업비 청구서

○ 사업추진주체 : ○○동(읍) ○○통(리) 사업추진위원회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금                      원정(W                      )

### 1. ○○○ 공사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세부내역 별첨
- 계좌번호 :
- 감 독 자 : ○○○ (인) / 검 수 자 : ○○○ (인)

### 2. ○○○ 구입(구매)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세부내역 별첨
- 계좌번호 :
- 감 독 자 : ○○○ (인) / 검 수 자 : ○○○ (인)

상기 금액을 ○○동(읍) ○○통(리) 마을가꾸기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동(읍) ○○통(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인)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 신청서

|             |                             |      |  |
|-------------|-----------------------------|------|--|
| 성명<br>(세대주)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  |

※ 주변영향지역 주민(세대주)이며,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하는 마을가꾸기사업(통·리별 가구별<현물>)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열람용보고서 열람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지원규모 등)가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통·리별 가구별(현물)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확정·열람 등 객관적 주민지원사업 추진
- (수집·이용·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2018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인)